



의 안 번 호	제111호
회 의 연 월 일	2020. 9. 21. (제446회 정기회의)

심의
·
의결
사항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출 부 서	경 찰 청 (감사관실)
제출연월일	2020. 9. 14.

감사기획계장, 감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찰공무원의 비위 정도에 상응하여 징계등 양정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며,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등 의결 요구자·신청자의 참석을 의무화하고, 영상회의 등을 통해 징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성비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성별 고려 의무화(안 제7조)

- 1)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1/3 이상 포함

나.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등 의결 요구자 또는 신청자의 징계위원회 참석 의무화(안 제13조)

다. 서면의결 활성화 및 영상회의 운영 근거 규정 신설(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 1) 징계위원회 관할 이송, 징계등 의결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2) 필요시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경우에도 위원 및 징계등 사건 당사자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봄

라. 징계위원회 의결 시 참작사유에서 ‘근무 성적’을 삭제하고 ‘혐의 당시 계급 및 직위’와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안 제16조)

마. 징계등 사건 당사자가 회의 참여 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회의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금지행위 위반 시 중지 또는 퇴장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바. 주요 비위 징계 감경 제한에 따른 확인서 보완(별지 제2호)

- 1)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도 표상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됨에 따라 확인서에 해당 내용 추가
- 2) 현재 포상 등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되고 있는 비위인 ‘소극행정’, ‘불법 체포·감금, 독직폭행’, ‘공무원 채용 관련 비위’도 확인서에 반영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11조제1항 단서 중 “기간”을 “기한”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징계의 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징계위원회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 및 징계등 심의 대상자, 징계등 의결을 요구 또는 요구를 신청한 자, 증인,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 위원 및 출석자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6조 중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를 “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하며, 그밖에 회의장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건이 포함된 징계위원회 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징계위원회에 관하여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조(징계등 의결 요구자 등의 징계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
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징계등 사건 의결 시 고려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확인서

1. 인적사항	소속 (현재) (협의 당시)	직위(직급) (현재) (협의 당시)	성명			
2. 비위유형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는 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성폭력 범죄 (□해당함, □해당 없음)					
	성희롱 또는 성매매 (□해당함, □해당 없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해당함, □해당 없음)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해당함, □해당 없음)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해당함, □해당 없음)					
	소극행정 (□해당함, □해당 없음)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해당함, □해당 없음)					
	특정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 (□해당함, □해당 없음)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 및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부정청탁 (□해당함, □해당 없음)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당함, □해당 없음)						
3.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해당함, []해당 없음), 대상금액(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4.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함,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근무 성적 (최근 2년)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7. 그 밖의 사항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 불합리한 법령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규제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다만, 고의·중과실이거나 금품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직위)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생략) <u><신 설></u>	제7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u>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u> <u>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u> <u>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u>
<u>② ~ ⑤ (생략)</u>	
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 ①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	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 ① -- ----- ----- ----- -----. ----- ----- -----

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심문과 진술권) ① ~ ③ (생략)

④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생략)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

② (생략)

<신설>

----- 기한-----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심문과 진술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
-----.

다만, 중징계의 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

<신 설>

③ (생 략)

<신 설>

계등 의결의 기한 연장에 관
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4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 및 징계등 심의 대상
자, 징계등 의결을 요구 또는 요
구를 신청한 자, 증인,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
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
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
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
의결하는 경우 위원 및 출석자
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6조(징계등의 정도)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6조(징계등의 정도) -----

----- 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과 -----
-----.

제22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하며, 그밖에 회

	<u>의장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감사담당관	
연 락 처	(02) 3150 - 0424